

의안번호	2207973
의 퇴 인	권칠승 의원
회 답 일	2025. 4. 15.
추계번호	25A076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3항제4호의2 신설(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7조제3항제4호의2 신설(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1)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에 실시 중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현재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한 상표 출원, 분석·진단 및 브랜드 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참고자료]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사업 현황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추계에 필요한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법률상 기본계획 규정에 지식재산권 취득·보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규모가 증액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확대 또는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자의 수, 예산 지원 단가 등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기존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추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의 수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원 단가나 한도도 정부의 재정 여건 및 재원 추가 투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교부되는 국비 보조 (100%)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상 17개 시·도별로 평균 2억 5,300만원 등 총 42억 9,200만원(= 252.5백만원 × 17개 시·도)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지원 단가(2억 5,300만원)는 레시피 특허 및 디자인 출원 등 상표 출원 1억 3,200만원, 지식재산 분석·진단,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 컨설팅 지원 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참고자료]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사업 현황

- 이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 지식재산 창출지원(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232-300)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내역사업)
- (목적)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인조직

□ 사업내용 및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내용	2025년도 예산	비고(편성근거)
IP 인식 제고		소상공인 대상 지재권 교육·설명회·캠페인 개최 등	42	25백만원×1식×17개 시도
IP 권리화 지원	IP 출원	상표출원 지원(후속지원: 레시피 특허, 디자인 출원)	2,244	06백만원×220건×17개 시도
	IP 창출 종합패키지	IP 분석·진단,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 IP 융합컨설팅 지원	1,700	10백만원×10건×17개 시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306	18백만원×1건×17개 시도
합계			4,292	-

자료: 특허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